

『구미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지난 5. 28일 장학회 설립 발기인 총회시 재단 명칭을 재단법인 구미시장학재단으로 확정하고 설립등기를 함에 따른 후속 조치
- 장학재단 임원 중 이사 수 증원으로 기관·단체 및 고액 기탁자의 재단운영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범시민 자발적 동참 분위기 조성

3. 주요내용

- 조례명 및 각 조항 문구 변경
 - 구미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명을 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명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각 조항의 문구 변경
- 이사의 수 증원(안 제3조 제1항)
 - 이사수를 5인 이상 15인에서 5인 이상 25인 이하로 증원

4. 참고사항

- 「재단법인 구미시장학재단 정관」 제2조 및 제16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구미시를 대표하면서 시민 모두를 위한 포괄적인 뜻이 내포된 장학재단 명칭이 더 적합하다는 법인설립 발기인 총회의 의견을 수렴하고
- 각계각층 시민대표의 재단운영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범시민 참여분위기 조성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장학재단 이사 수를 증원하는 내용 임

○ 주요 내용은

- 「구미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」를 「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」로 제명 변경하고,
- 장학재단의 이사 수를 「5인 이상 15인 이하」에서 「5인 이상 25인 이하」로 증원하였음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법인의 설립등기와 부합되게 조례명을 변경하고 재단임원 중 이사 수를 증원하여 재단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이나 타 조례에 저촉사항 없음